

-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대책 -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생계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종사자 지원 (사업장 기준)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추진으로 사업기간(6월30일까지)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하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
- (지원기간) '20. 2. 23. ~ '20. 5. 31.
- (지원대상) 성남시 소재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종사자
 - 4.10 이전 성남시 소재 50인미만 사업장
 - * 근로자수 산정기준 : 성남시 소재 사업장(영업소, 직영점 등)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본사가 서울 등 타지역에 소재해도 성남시 소재 영업소, 직영점 등의 근로자 수로 기준)
 -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제외
 - '20.2.23.이후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종사자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휴직 종사자)
- (지원금액) 무급휴직 5일이상 종사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무급휴직 종사자 본인 계좌이체 (현금)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 : 사업주 (근로자도 가능)
 - 신청기간 : 2020. 4. 20.(월) ~ 6. 30.(화)
 - 신청방법 : 문서24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서24 (<http://open.gdoc.go.kr/index.do>) 접수
 - * 신청기간 : 2020. 4. 20.(월) ~ 6. 30.(화)
 - * 회원가입 후 “문서작성” → 받는기관 : 성남시 고용노동과 선택후 → 첨부서류 선택 후 전송요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기간 : 2020. 5. 1.(금) ~ 6. 30.(화)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 → 지원대상 선정·지급

※ 제외대상

1. 고용보험 미가입자
2. 무급휴직 종사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
3.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4. 고소득자(2019년도 개인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제외)
5. 유급휴가지원금,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받은 자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가 시 수당지급>

대 상	지 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유급휴가지원금(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개인별 일급기준(월 13만원 상한)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사업장 휴업	휴업수당 발생(근로기준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4~2/3, 1일 상한액 6.6만원)
중국공장 휴업 등 코로나19영향으로 작업량매출고객감소로 인한 사업장 휴업	

○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비 고
• 사업주가 신청할 때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첨부 서식 3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첨부 서식 3-1
3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첨부 서식 4
4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5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발급
• 근로자가 신청할 때		
6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근로자용)	첨부 서식 5 사업장(고용주) 또는 위탁자 발급
7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사업주 작성 및 확인
8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발급
• 공통서류		
9	개인정보동의서	첨부 서식 7 (자필서명)
10	보조금부정수급관리 확인서	첨부 서식 8 (자필서명)

구 분	신 청 서	비 고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 지원 신청	1.(앞)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1.(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4.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공통	7.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8.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협약서	모든 신청자 제출필요

* 해당 사업 신청자는 상기 구비서류를 붙임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제출

[서식 1] - 앞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연락처:	⑦ 근로자수:	⑧ 업종:

2. 신청내용

- ① 무급휴직 실시 사유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기타 (사유 기재: _____)
- ②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2020. . . . ~ 2020. . . .
- ③ 무급휴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별도 명단 첨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경기도 성남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협약서 6.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A형),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A형) 2.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A형) 3.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C형)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번호)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기타 (사유 기재: _____)		
③ 무급휴직 기간: 2020. . . ~ 2020. . .		
④ 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 ()시간		
⑤ 지원 신청 해당 월(기간)의 무급휴직일수: ()일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성남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A형),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A형) 2.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A형) 3.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C형)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4]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사업장 개요

- ① 사업장명(대표자):
- ② 소재지:
- ③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④ 업종: ⑤ 근로자수:
- ⑥ 연락처: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_____의 사유로 2020. . . ~ 2020. . .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고, _____(근로자 성명)는 __월에 __일의 무급휴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무급휴직일수는 실제 근로해야할 일 수

2020년 _____월 _____일

확인자 (주) _____ 대표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성남시장 귀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성남시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및 성남시정에 관한정보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성남시장 귀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①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②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③ 또한, 본인은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

- ※ 고소득자일 경우 체크 소득기준 상위 10% <월 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성남시장 귀하

Q&A

1.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고일인 '20.4.10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 소재 50일미만 사업장의
-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휴직 종사자로
-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된 '20.2.23. 이후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종사자

2. 제외 대상자는?

- 고용보험 미가입자
- 무급휴직 종사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 혈족 및 인척인 경우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유가휴지원금,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자
- 신청자 본인 기준 2019년 고소득자(개인연소득 7,000만원 이상 제외)

3.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5일이상 무급휴직 종사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아닌 무급휴직 종사자의 계좌로 이체됨

4. 제출서류는 ?

- 사업주가 신청할 때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2.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3.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자용)
 5. 개인정보동의서
 6. 보조금부정수급관리 확인서
- 근로자가 신청할 때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근로자용)
 2.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3.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4. 개인정보동의서
 5. 보조금부정수급관리 확인서

5.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종사자 지원신청은 꼭 사업주가 해야하나요?

- 기본 원칙은 사업주가 해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가능함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신청해도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함

6.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종사자 신청시 사업장은 성남인데 종사자의 주소가 용인(타시군)인 경우 신청은 어디에?

- 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 지원사업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 종사자의 주소와 무관하므로 성남에 신청

7. 무급휴직종사자 지원 인터넷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문서24는 인터넷으로 공공기관에 서류를 하는 제출할 수 있는 사이트로
문서24 (<http://open.gdoc.go.kr/index.do>) 가입 → 회원가입 후 “문서작성”(제출서류 업로드)
→ 받는기관 : 성남시 고용노동과 선택후 → 첨부서류 선택 후 전송요청

8.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주)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접속
→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9.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접속
→ 근로자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